KOSCA
대한전문건설협회
강원특별자치도회

수 신 : 신규등록 및 영업정지 사업자

참 조 :

제 목 : **건설교육센터 12월 「건설업윤리 및 실무교육」 안내**

---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4에 의거하여 신규로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「건설업 교육」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만 하여(6개월 이내 교육 미이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), 영업정지처분 중에 있는 사업자는 교육 이수 시 처분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.

3. 이와 관련하여, 우리협회 건설교육센터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5에 의거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업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다음과 같이 건설업 교육을 개설하여 실시하오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가. 교 육 명 :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

나. 교육대상
- ○ (의무) 신규건설업 등록업체 대표 또는 등기부등본 임원
- ○ (임의) 영업정지 처분 중인 사업자 대표 또는 등기부등본 임원

다. 교육 운영
- ○ 집합교육

교육차수	교육일정	지 역	교육장소
제44기	12.16(수)	서 울	서울 전문건설회관
제45기	12.23(수)	세 종	세종센터

○ 온라인(이러닝)교육

교육차수	접수마감	교육기간		총교육시간	비고
		부터	까지		
제43기	11.30	12.03	12. 9	8시간	
제44기	12. 7	12.10	12.16		

○ 이러닝 학습방법 및 교육수료

구분	내용
교육신청	교육차수별 접수마감일까지
학습방법	홈페이지(https://edu.kosca.or.kr) 접속·로그인 - 사이버연수원 바로가기 - 나의강의실에서 학습 ※ 교육차수별 **정해진 교육기간내 수강**
교육수료	1. 수료조건 : **학습기간 종료일 기준 진도율 100%**인 경우 ※ 교육기간내 학습진도율 100% 미충족 또는 시험 미응시시 미수료 처리, 교육비 환불불가 2. 이수통보 : **학습기간 종료일을 기준**으로 등록관청에 교육 이수 통보 ※ 온라인교육은 학습기간(7일) 기준으로 이수 통보 ※ 교육기간 종료 후, 익일부터 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수료증 출력 가능

라. 교육비 : (집합) 150,000원 / (온라인교육) 135,000원

마. 문의처 :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교육센터 (T.02-3284-1076, 1080)

붙임 건설업교육 안내문 1부. 끝.

(홈페이지 gangwon.kosca.or.kr - 게시판 공문/공지사항 참조)

대한전문건설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

회 장 오 성 진

담당 대리 정다은 부장 유용석 기획관리실장 이을예
시행 전건협 강원 제 808 호 (2026. 11. 24)
우 24376 강원 춘천시 퇴계로 89 강원전문건설회관 4층 / https://gangwon.kosca.or.kr/
전화 033-254-4324 전송 033-257-4324 / 전자우편 kosca32@kosca.or.kr